**감 정 평 가 의 뢰 서**

|  |  |
| --- | --- |
| **평가의뢰인 또는** **기관 및 상호명** |  (인) ☎ :  FAX :  |
| **평가 의뢰인 주소** |  |
| **담당자** |  ☎ :  e-Mail :  |
|  \*담보평가로서 채권기관(협약기관)이 직접  의뢰하지 않는 경우 평가목적이 담보용임을 확인함. | 은행(협약기관)(인)부점  |

 **아래 기재한 물건에 대하여 후면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  |  |
| --- | --- |
| **평가목적** | ◇담보 ◇일반거래 ◇처분 ◇매수 ◇보상 ◇자산재평가 기타( ) |
| **물건종류** | ◇토지 ◇건물 ◇산림 ◇공장 ◇동산 ◇무형고정자산 기타( ) |
| **소재지** |   |
| **소유자** | 성명 |  | **채무자** | 성명 |  |
| **소유자** | 연락처 |  ☎ | **채무자** | 연락처 |  ☎ |
| **제출처** |  | **소요부수** |  부 |
| **감정평가****의뢰시****필요서류**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 · 지적도(임야도) 부· 토지(임야)대장 부 · 일반건축물대장(도면첨부) 부· 등기부등본 부 · 기계기구목록 등 기타 필요서류 부  |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
| 상호 또는법인명 |  | 사업장주소 |
| 대표자 |  | 업태 |  | 종목 |  |
| ※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착수금** |  |
| 착수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5-844756 / 우리은행 513-118341-13-101 / 농협은행 1277-17-001178  하나은행 162-910004-49204 / 기업은행 023-095836-01-013 / 외환은행 630-008220-759  |
|

|  |  |
| --- | --- |
|  | **(주) 감 정 평 가 법 인 삼 일**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5동 606호 (문정동, 파크하비오) T:02-744-1601 F:02-744-1603 |

 |
| **- 약 정 사 항 -** |
| 1. 감정평가 의뢰인은 우리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보수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2. 감정평가 의뢰물건(권리)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사변이나 우리 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건(권 리)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3. 감정평가 의뢰인은 의뢰물건의 추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 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장여비가 착수금을 초과할 경우, 특별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착수금에 추가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4. 감정평가보수는 우리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완료를 통지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5. 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납입한 착수금은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담보평가인 경우 확인 금융기관 포함)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6호에 준합니다.6. 감정평가 의뢰 후 현장조사 전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1호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반려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은 우리 법인에 귀속하며, 현장조사 후에는 착수금은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감정평가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7. 감정평가서는 의뢰시 용도(감정평가 목적과 제출처)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우리 법인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복사 또는 활용하거나 우리 법인 소정절차에 의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당초의 용도(감 정평가 목적 및 제출처) 이외에 사용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8. 감정평가에 관한 소송은 우리 법인 본 ․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